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25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공급 안내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따라 공급합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청약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등)의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정시 하루전 방문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1551-04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접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홈페이지(https://gm.hndapt.co.kr)에서 확인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 본 안내문은 분양승인 전 제작 발송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참고 하신 후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규모

- **공급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380-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18층 10개동, 총 444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7년 11월 예정 (입주 예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개요**

(단위 : m²,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약식표기	주거공용	소계			
83.4952A	83A	24.4107	107.9059	65.8016	173.7075	201
83.3183B	83B	25.2226	108.5409	65.6622	174.2031	135
83.7468C	83C	24.7289	108.4757	66.0000	174.4757	24
93.6147	93	27.4551	121.0698	73.7765	194.8463	84
합계						444

※ 상기 공급개요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지자체의 승인기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괄호() 안은 예비자 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m² 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배정 세대수(예비 500%)		
	83A	83B	83C
국가유공자등	1(5)		
장기복무제대군인	1(5)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5)		
중소기업근로자	1(5)		
철거민	11(55)	11(55)	2(10)
장애인	경기도	1(5)	
	서울특별시	2(10)	1(5)
	인천광역시	1(5)	1(5)
합계	20(100)	14(70)	2(10)

- ※ 상기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그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계획(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4.10.24.(목)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	
건본주택개관	2024.10.25(금)	당사 건본주택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특별공급접수	2024.11.04.(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09:00~17:30	
일반공급	1순위		2024.11.05.(화)
	2순위		2024.11.06.(수)
당첨자발표	2024.11.12(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계약체결	2024.11.25.(월) ~ 11.27(수)	당사 건본주택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건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가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요건 및 무주택 요건

구분	내용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 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 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는 제외함)

구분		해당기관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철거민		광명시청 도시개발과
장애인	경기도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제외)

-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광명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p>※ 해당 추천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합니다.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포기하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택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향후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며, 공고문 미확 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인쇄 제작물,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홈페이지(<https://gm.hndapt.co.kr>)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